

## 학술정보자료 상호 이용에 관한 협약서

대구대학교와 대구미래대학의 새로운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계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연계교육협약 체결에 따라 양 대학 도서관은 연계교육협약 체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양 대학 도서관 소장 학술정보자료를 소속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조와 같이 협약한다.

제1조(목적) 양 대학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학술정보자료를 상호 이용함으로서 교수활동 및 왕성한 학술연구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료의 이용자격) 자료의 이용은 협약기관의 요청 및 협약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로 한다. 단, 신분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3조(자료이용) 자료의 열람, 대출, 복사의 이용은 각 기관의 규정과 개관시간에 따르며, 자료의 대출은 단행본에 한하여 관대관 상호대차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연속간행물의 상호 대차는 상호 협의에 따른다.

① 관대관 상호대차 : 50책 1개월

② 문현복사는 각 도서관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, 우편, E mail, FAX 등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. 단,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
제4조(자료열람) 양 대학 도서관 자료실내의 자료에 대해 열람 및 정보검색 편의를 제공한다.

제5조(자료교환) 양 대학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을 상호 교환한다.

제6조(이용제한) 양 대학 도서관의 방침에 따라 일시 휴관할 경우 상호 통보에 따라 이용을 제한한다.

제7조(협약) 양 대학 도서관은 본 협정서의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협의를 통하여 개정할 수 있다.

① 본 협약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양 도서관 직원 1인을 실무자로 둔다.

② 양 대학 도서관의 발전과 업무협조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실무자회의를 개최하며, 상호 협의에 의하여 재조정 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1. 본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제반사항은 상호협의에 따라 처리한다.

2. 본 협약서는 대구대학교 중앙도서관장과 대구미래대학 중앙도서관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은 양 대학이 체결한 협동대학 협약이 존속될 때까지 유효하다.

2002. 01. 01.

대구대학교 중앙도서관

관장 이경미

대구미래대학 중앙도서관

관장 김재선